

| | |
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의안번호 | 제 2018 - 7호 |
| 의 결 연 월 일 | 2018. 4. 30. (제86차 회의) |

보
고
안
건

운영지원단 업무보고

| | |
|-------|--------|
| 제 출 자 | 운영지원단장 |
|-------|--------|



목 차

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
| I. 전문위원 회의 업무 지원 | 1 |
| II. 양형위원 개임 | 2 |
| III. 2018년도 제10차 자문위원 회의 개최 | |
| 1. 개요 | 3 |
| 2. 참석 현황 | 3 |
| 3. 회의 내용 | 3 |
| 4. 향후 계획 | 3 |
| IV. 양형기준안 의견수렴 계획 보고 | |
| 1. 개요 | 4 |
| 2. 관련 규정 | 4 |
| 3. 의견수렴 계획 | 4 |
| 4. 시행 일정 | 11 |
| V. 양형연구회 창립 및 심포지엄 개최 | |
| 1. 양형연구회 창립 | 12 |
| 2. 창립 심포지엄 개최 | 13 |
| 3. 향후 계획 | 14 |
| VI. 각종 의견 접수 및 처리 | |
| 1. 서면 질의 등 민원 및 회신 | 15 |
| □ [별지] | 「신임 양형위원 프로필」 |

I. 전문위원 회의 업무 지원

○ 운영지원단은 전문위원 전체회의의 회의자료 준비, 회의록 작성 등의 지원업무를 수행하였음

○ 전문위원 전체회의 개최 현황

| 회의명 | | 일 시 | 안 건 |
|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|
| 전문위원 전체회의 | 제116차 | 2018. 4. 16. 16:00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○ 공갈, 체포·감금·유기·학대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심의○ 권리행사방해, 손괴, 약취·유인·인신매매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심의 |

II. 양형위원 개입

가. 개요

- 2018. 4. 12.자로 이선재 위원 사임
- 2018. 4. 13.자로 김의철 위원 위촉

나. 양형위원 구성

| 지위 | 성명 | 생년월일 | 직위 | 위촉일자 (임명일자) |
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
| 위원장 | 정 성 진 | 1940. 07. 04. | 국민대 명예교수 (전) 제59대 법무부장관 | 2017. 4. 27. |
| 위원 (법관) | 최 완 주 | 1958. 01. 13. | 서울고등법원장 | 2017. 4. 27. |
| | 서 태 환 | 1964. 12. 02. |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| 2017. 4. 27. |
| | 이 은 애 | 1966. 05. 21. |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 | 2018. 3. 26. |
| | 천 대 엽 (상임위원) | 1964. 02. 06. |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| 2017. 5. 1. |
| 위원 (검사) | 조 은 석 | 1965. 05. 21. |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| 2017. 9. 11. |
| | 송 삼 현 | 1962. 04. 16. |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| 2017. 9. 11. |
| 위원 (변호사) | 한 명 관 | 1959. 04. 07. | 변호사 | 2017. 4. 27. |
| | 곽 정 민 | 1977. 01. 01. | 변호사 | 2017. 4. 27. |
| 위원 (교수) | 원 혜 욱 | 1962. 07. 08. | 인하대 교수 | 2017. 4. 27. |
| | 이 주 원 | 1965. 06. 16. | 고려대 교수 | 2017. 4. 27. |
| 위원 (학식·경험) | 김 의 철 | 1962. 07. 26. | 한국방송공사 보도본부장 | 2018. 4. 13. |
| | 차 병 직 | 1959. 03. 03. | 변호사 | 2015. 4. 27. |

※ 신임 양형위원의 자세한 경력은[별지]신임 양형위원 프로필 참조

Ⅲ. 양형위원회 제10차 자문위원 회의 개최

1. 개요

- 일 시: 2018. 4. 10.(화) 16:00 ~ 18:00
- 장 소: 대법원 1601호 회의실

2. 참석 현황

- 위원장, 상임위원, 운영지원단장
- 자문위원 13인(고학수, 고성국, 김자혜, 문채규, 문영화, 서창록, 변상욱, 신혜수, 손동권, 윤영미, 오미영, 최은순, 홍은희)

3. 회의 내용

- 양형위원회 현황 보고 및 양형기준 수정 경과 보고
- 폭력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에 대한 주요내용 설명 및 자문 의견 청취

4. 향후 계획

- 자문위원 회의는 통상 연 1~2회 개최(개최 시기는 위원장이 결정)
- 양형기준 수정안 심의 경과에 따라 회의를 개최할 예정

IV. 양형기준안 의견수렴 계획 보고

1. 개요

- 위원회는 양형기준의 설정 절차를 객관화·투명화하는 동시에 양형기준에 대한 대외적인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양형기준안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할 계획임

2. 관련 규정

- 양형위원회규칙

▶ 제11조(의견수렴)

위원회는 각급 법원과 관계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의견을 조회할 수 있고, 공청회, 토론회, 여론조사 등을 통하여 각계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.

- 양형위원회 운영규정

▶ 제17조(양형기준안에 대한 의견 수렴)

- ① 위원회는 제16조 제1항의 양형기준 초안 또는 양형기준안에 대하여 법원과 관계 국가기관·공공기관·연구기관·단체·전문가 또는 자문위원 등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요청하여야 한다.
- ②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제1항의 기관·단체 등의 대표자 또는 담당자, 전문가 등과 간담회,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.

3. 의견수렴 계획

가. 대상 양형기준 수정안

- 제86차 회의에서 심의를 거쳐 확정된 양형기준 수정안(공갈, 체포·

감금·유기·학대, 권리행사방해범죄)

나. 공갈 양형기준 수정안 의견조회 대상기관 선정(안)

| 연번 | 구분 | 기관 | 비고 |
|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1 | 입 법 부 | 국 회 | 법제사법위원회, 행정안전위원회 |
| 2 | 사 법 부 | 대 법 원 | 법원행정처(사법지원실) |
| 3 | 행 정 부 | 경 찰 청 | 규제개혁법무담당관 |
| 4 | | 국 가 인 권 위 원 회 | 행정법무담당관 |
| 5 | | 국 민 권 의 위 원 회 | 법무감사담당관 |
| 6 | | 법 무 부 | 법무실장, 검찰국장, 범죄예방정책국장, 교정본부장 |
| 7 | | 법 제 처 | 운영지원과장 |
| 8 | 헌 법 재 관 소 | | 행정관리국장 |
| 9 | 연 구 기 관 | 대 한 범 죄 학 회 | 사무국장 |
| 10 | | 한 국 교 정 학 회 | 사무국장 |
| 11 | | 한 국 법 학 교 수 회 | 사무총장 |
| 12 | | 한 국 법 학 원 | 총무이사 |
| 13 | | 한 국 비 교 형 사 법 학 회 | 총무간사 |
| 14 | | 한 국 형 사 법 학 회 | 총무간사 |
| 15 | | 한 국 형 사 정 책 연 구 원 | 기획조정실장 |
| 16 | | 한 국 형 사 정 책 학 회 | 총무간사 |

| 연번 | 구분 | 기관 | 비고 |
|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
| 17 | | 한 국 피 해 자 학 회 | 사무총장 |
| 18 | | 한 국 형 사 소 송 법 학 회 | 총무간사 |
| 19 | | 한 국 형 사 판 례 연 구 회 | 총무간사 |
| 20 | 유 관 기 관 | 대 한 법 무 사 협 회 | 사무총장 |
| 21 | | 대 한 법 률 구 조 공 단 | 사무총장 |
| 22 | | 한 국 범 죄 방 지 재 단 | 사무총장 |
| 23 | | 대 한 변 호 사 협 회 | 사무총장, 청년변호사특별위원회 |
| 24 | |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| 사무총장 |
| 25 | |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 | 사무총장 |
| 26 | |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| 사무총장 |
| 27 | | 한 국 여 성 변 호 사 회 | 사무총장 |
| 28 | | 시 민 단 체 | 참 여 연 대 |
| 29 | 한 국 Y M C A 전 국 연맹 | | 사무총장 |
| 30 | 한 국 Y W C A 연 합 회 | | 사무총장 |
| 31 | 한 국 여 성 단 체 연 합 | | 사무총장 |
| 32 | 한 국 성 폭 력 상 담 소 | | 소장 |
| 33 | 한 국 여 성 의 전 화 | | 사무처장 |
| 34 | 한 국 여 성 민 우 회 | | 사무처장 |
| 35 |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| | 사무처장 |

다. 체포·감금·유기·학대 양형기준 수정안 의견조치 대상기관 선정(안)

| 연번 | 구분 | 기관 | 비고 |
|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|
| 1 | 입 법 부 | 국 회 | 법제사법위원회, 보건복지위원회, 안전행정위원회, 여성가족위원회 |
| 2 | 사 법 부 | 대 법 원 | 법원행정처(사법지원실) |
| 3 | 행 정 부 | 경 찰 청 | 규제개혁법무담당관 |
| 4 | | 국 가 인 권 위 원 회 | 행정법무담당관 |
| 5 | | 국 민 권 의 위 원 회 | 법무감사담당관 |
| 6 | | 법 무 부 | 법무실장, 검찰국장, 범죄예방정책국장, 교정본부장 |
| 7 | | 법 제 처 | 운영지원과장 |
| 8 | | 보 건 복 지 부 | 규제개혁법무담당관 |
| 9 | | 안 전 행 정 부 | 법무담당관 |
| 10 | | 여 성 가 족 부 | 법무감사담당관 |
| 11 | | 헌 법 재 판 소 | 행정관리국장 |
| 12 | | 연 구 기 관 | 대 한 범 죄 학 회 |
| 13 | 한 국 교 정 학 회 | | 사무국장 |
| 14 | 한 국 법 학 교 수 회 | | 사무총장 |
| 15 | 한 국 법 학 원 | | 총무이사 |
| 16 | 한 국 비 교 형 사 법 학 회 | | 총무간사 |
| 17 | 한 국 형 사 법 학 회 | | 총무간사 |

| 연번 | 구분 | 기관 | 비고 |
|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
| 18 | | 한국형사정책연구원 | 기획조정실장 |
| 19 | | 한국형사정책학회 | 총무간사 |
| 20 | | 한국피해자학회 | 사무총장 |
| 21 | 유관기관 | 대한법무사협회 | 사무총장 |
| 22 | | 대한법률구조공단 | 사무총장 |
| 23 | | 한국범죄방지재단 | 사무총장 |
| 24 | | 대한변호사협회 | 사무총장, 청년변호사특별위원회 |
| 25 | |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| 사무총장 |
| 26 | |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 | 사무총장 |
| 27 | |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| 사무총장 |
| 28 | | 한국여성변호사회 | 사무총장 |
| 29 | | 시민단체 |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|
| 30 |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| | 정책연구팀장 |
| 31 |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| | 정책연구팀장 |
| 32 | 참여연대 | | 사법감시센터, 청년참여연대 |
| 33 | 한국가정법률상담소 | | 총무부장 |
| 34 | 한국YMCA전국연맹 | | 사무총장 |
| 35 | 한국YWCA연합회 | | 사무총장 |
| 36 | 한국여성단체연합 | | 사무총장 |
| 37 | 한국성폭력상담소 | | 소장 |

| 연번 | 구분 | 기관 | 비고 |
|----|----|---------------|------|
| 38 | | 한 국 여 성 의 전 화 | 사무처장 |
| 39 | | 한 국 여 성 민 우 회 | 사무처장 |
| 40 | |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| 사무처장 |

라. 권리행사방해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의견조회 대상기관 선정(안)

| 연번 | 구분 | 기관 | 비고 |
|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1 | 입 법 부 | 국 회 | 법제사법위원회, 안전행정위원회 |
| 2 | 사 법 부 | 대 법 원 | 법원행정처(사법지원실) |
| 3 | 행 정 부 | 경 찰 청 | 규제개혁법무담당관 |
| 4 | | 국 가 인 권 위 원 회 | 행정법무담당관 |
| 5 | | 국 민 권 의 위 원 회 | 법무감사담당관 |
| 6 | | 법 무 부 | 법무실장, 검찰국장, 범죄예방정책국장, 교정본부장 |
| 7 | | 법 제 처 | 운영지원과장 |
| 8 | | 행 정 자 치 부 | 법무담당관 |
| 9 | 헌 법 재 판 소 | 행정관리국장 | |
| 10 | 연 구 기 관 | 한 국 교 정 학 회 | 사무국장 |
| 11 | | 한 국 법 학 교 수 회 | 사무총장 |
| 12 | | 한 국 법 학 원 | 총무이사 |
| 13 | | 한 국 비 교 형 사 법 학 회 | 총무간사 |

| 연번 | 구분 | 기관 | 비고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
| 14 | | 한 국 형 사 법 학 회 | 총무간사 |
| 15 | | 한 국 형 사 정 책 연 구 원 | 기획조정실장 |
| 16 | | 한 국 형 사 정 책 학 회 | 총무간사 |
| 17 | 유 관 기 관 | 대 한 법 무 사 협 회 | 사무총장 |
| 18 | | 대 한 법 률 구 조 공 단 | 사무총장 |
| 19 | | 한 국 범 죄 방 지 재 단 | 사무총장 |
| 20 | | 대 한 변 호 사 협 회 | 사무총장, 청년변호사특별위원회 |
| 21 | |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| 사무총장 |
| 22 | |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 | 사무총장 |
| 23 | |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| 사무총장 |
| 24 | | 한 국 여 성 변 호 사 회 | 사무총장 |
| 25 | | 시 민 단 체 | 경 제 정 의 실 천 시 민 연 합 |
| 26 | 참 여 연 대 | | 사법감시센터, 청년참여연대 |
| 27 | 한 국 Y M C A 전 국 연 맹 | | 사무총장 |
| 28 | 한 국 Y W C A 연 합 회 | | 사무총장 |
| 29 | 한 국 여 성 단 체 연 합 | | 사무총장 |
| 30 | 한 국 성 폭 력 상 담 소 | | 소장 |
| 31 | 한 국 여 성 의 전 화 | | 사무처장 |
| 32 | 한 국 여 성 민 우 회 | | 사무처장 |
| 33 |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| | 사무처장 |

4. 시행 일정

○ 의견조회 기간 : 2018. 5. 1~ 6. 1.

○ 의견조회 취합 : 2018. 6. 1.

※ 의견수렴 결과는 위원회 제87차 회의(2018. 6. 11.) 시 보고 예정

V. 양형연구회 창립 및 심포지엄 개최

1. 양형연구회 창립

가. 설립 필요성

- 법원조직법 제81조의2는 양형위원회의 역할로 ① 양형기준 설정·변경 기능 및 ② 양형정책 연구·심의 기능을 규정하고 있음
- 양형기준 설정 작업이 대상 범죄의 90%를 상회하는 현 시점에서 향후 양형위원회의 역할은 양형기준 수정 작업 외에 양형정책 연구·심의 기능이 강화되어야 함

나. 참가 대상 기관

- 양형실무와 양형정책에 관하여 연구하는 기관, 단체, 개인
 - ▶ 현) 양형위원, 전문위원, 자문위원(당연직 회원)
 - ▶ 대법원 형사법연구회, 각급 법원 양형실무연구회
 - ▶ 검찰
 - ▶ 사법정책연구원
 - ▶ 한국형사정책연구원
 - ▶ 한국형사법학회, 한국비교형사법학회, 한국형사소송법학회, 한국피해자학회, 한국형사정책학회, 한국형사판례연구회, 법경제학회, 법심리학회, 교정학회 등
 - ▶ 대한변호사협회, 서울변호사협회, 국선전담변호사, 피해자 국선변호사 등
 - ▶ 형사법 교수, 역대 양형위원, 전문위원

다. 주요 업무

- 학술대회 개최
- 양형관련 연구기관 및 학회, 전문가단체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

- 정기간행물 발간
- 심포지엄 분기별 개최

라. 기대 효과

- 학계, 실무계 등이 연구한 성과를 정기적,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토론함으로써, 앞으로 양형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다양한 쟁점과 해결방안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고, 통일적·체계적인 접근을 할 수 있을 것임

2. 창립 심포지엄 개최

가. 필요성

- 양형연구회의 힘 있는 출발을 위해서 연구회에 함께하는 회원들이 모여 양형연구회의 출범을 기념하고, 회원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와 동시에 대외적으로도 양형연구회의 출범을 알릴 수 있는 행사가 필요함
- 2018. 1. 15. 제84차 양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양형인자로서 ‘합의’와 관련하여 현행 양형기준에 제기되는 여러 문제점들에 대하여 학계, 실무계 등 각계의 의견을 듣고 바람직한 양형기준 수정방향에 관하여 논의할 수 있는 공론화의 장을 개최하기로 의결

나. 심포지엄의 주제 : 『형사재판에서의 실질적 범죄피해회복 방안과 양형인자로서의 합의』

- 양형연구회 창립 기념 심포지엄은 양형에 관한 거시적·근본적인 시각과 미시적·실용적인 시각이 융화될 수 있어야 함
- 합의와 관련된 큰 화두는 ‘회복적 사법’ 또는 ‘범죄 피해 회복’이라 할 수 있음
- 양형에 있어 피해자와의 합의(또는 처벌불원)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

대한 실천적인 논의는 양형위원회의 양형정책 연구·심의기관의 위상과
도 정확히 부합하는 주제

다. 심포지엄 일시·장소

- 명칭 : 양형연구회 창립 기념 심포지엄
- 주제 : 『형사재판에서의 실질적 범죄피해회복 방안과 양형인자로서의 합의』
- 주최 : 대법원 양형위원회
- 일시
 - ▶ 2018. 7. 16.(월) 13:30 ~ 18:00 양형연구회 창립 기념 심포지엄
 - ▶ 2018. 7. 16.(월) 18:30 ~ 21:00 만찬 겸 양형연구회 창립총회
- 장소 : 대법원 4층 401호 대회의실(예정)
- 만찬 : 대법원 매화식당(예정)

3. 향후계획

- 2018. 4. 30. 양형위원회 제86차 전체회의
 - ▶ 양형위원회 운영규정 개정 : 양형연구회 근거규정 마련
 - ▶ 양형연구회 창립 기념 심포지엄 계획안 보고 및 확정
- 2018. 5.~7.초경
 - ▶ 양형연구회 발기인 회의 주최
 - ▶ 행사 세부계획안 확정 및 행사준비

VI. 각종 의견 접수 및 처리

1. 서면 질의 등 민원 및 회신

가. ‘국민신문고 게시판’

○ 접수의견

| 순 번 | 접수일자 | 질의요지 |
|--------|--------------|---|
| 1 | 2018. 2. 6. | ○ 살인죄 및 살인미수죄의 강력범죄 위험성을 우려하며, 그 법적 처벌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내용 |
| 2 | 2018. 3. 19. | ○ 무고범죄에 대한 형량을 전반적으로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내용 |
| 3 | 2018. 3. 26. | ○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, 사기 사건 등 경제사범들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을 지양하고 양형기준을 대폭 강화하여야 한다는 내용 |
| 4 | 2018. 4. 5. | ○ 무고범죄에 대한 형량을 전반적으로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내용 |
| 5 | 2018. 4. 10. | ○ 언론에서 접한 여러 범죄에 대한 판결이 범죄행위에 비해 처벌이 낮음을 비판하며 처벌을 강화하여 달라는 내용 |
| 6 | 2018. 4. 18. | ○ 사기죄와 관련하여 그 형량이 너무 가벼우므로, 사기죄의 법적 처벌수준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내용 |

○ 1번 질의에 대한 처리 결과

-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양형위원회로 접수된 귀하의 민원서에 대한 회신입니다.

- 먼저, 양형과 관련한 귀한 의견을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.
- 우리나라 살인죄 및 살인미수죄와 관련하여 그 형량이 너무 가벼우므로 양형기준을 대폭 강화하여야 한다는 귀하의 의견에 관하여는 양형위원회 회의 또는 전문위원 전체회의에 보고하여 향후 양형위원회 회의나 전문위원 전체회의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
- 아울러, 보내주신 의견은 살인범죄 관련한 양형기준의 검토 과정에서 충실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.
- 우리 양형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.
- 위와 같은 내용으로 회신.

○ 2번 질의에 대한 처리 결과

-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양형위원회로 접수된 귀하의 민원서에 대한 회신입니다.
- 먼저, 양형과 관련한 귀한 의견을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.
- 무고범죄에 대한 형량을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귀하의 의견에 관하여는 향후 양형위원회 회의나 전문위원 전체회의에서 충실히 검토,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
- 우리 양형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.
- 위와 같은 내용으로 회신.

○ 3번 질의에 대한 처리 결과

-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양형위원회로 접수된 귀하의 민원서에 대한 회신입니다.
- 먼저, 양형과 관련한 귀한 의견을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.
- 선량한 국민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또한 재범발생의 방지를 위하여 사기범죄 양형기준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귀하의 의견에 관하

여는 양형위원회 회의 또는 전문위원 전체회의에 보고하여 향후 양형위원회 회의나 전문위원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

- 아울러, 보내주신 의견은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범죄의 양형기준 설정과 사기범죄 양형기준에 대한 보완 과정에서 충실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.
- 위와 같은 내용으로 회신.

○ 4번 질의에 대한 처리 결과

-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양형위원회로 접수된 귀하의 민원서에 대한 회신입니다.
- 먼저, 양형과 관련한 귀한 의견을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.
- 무고범죄에 대한 형량을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귀하의 의견에 관하여는 향후 양형위원회 회의나 전문위원 전체회의에서 충실히 검토,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
- 우리 양형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.
- 위와 같은 내용으로 회신.

○ 5번 질의에 대한 처리 결과

-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양형위원회로 접수된 귀하의 민원서에 대한 회신입니다.
- 먼저, 양형과 관련한 귀한 의견을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.
- 살인범죄 등 흉악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귀하의 의견에 관하여는 향후 양형위원회 회의에서 충실히 검토,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
- 우리 양형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.

- 위와 같은 내용으로 회신.

○ 6번 질의에 대한 처리 결과

-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양형위원회로 접수된 귀하의 민원서에 대한 회신입니다.
- 먼저, 양형과 관련한 귀한 의견을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.
- 사기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귀하의 의견에 관하여는 향후 양형위원회 회의에서 충실히 검토,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
- 우리 양형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.
- 위와 같은 내용으로 회신.

나. 민원 우편

○ 접수 의견

| 순 번 | 접수일자 | 질의요지 |
|--------|--------------|--|
| 1 | 2018. 2. 13. | ○ 민원인은 현재 치료감호소에 있는 피고인으로 자신에게 적용된 양형의 내용 및 근거를 알려달라는 내용 |
| 2 | 2018. 3. 23. | ○ 살인범죄 등 흉악범죄에 대하여 판결 형량이 너무 낮음을 비판하며, 흉악범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을 대폭 높여달라는 내용 |

○ 1번 질의에 대한 처리 결과

- 양형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.
- 양형위원회로 접수된 귀하의 민원서에 대한 회신입니다.
- 양형위원회는 형사재판에서 법관이 합리적인 양형을 도출하는 데

참고할 수 있는 양형기준을 설정·변경하고 양형정책을 심의·의결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의결기관으로, 개별 형사재판에서의 법관의 판단 및 재판 결과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답변해 드릴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- 양형위원회는 법원조직법 제81조의6 제4항, 양형위원회규칙 제6조에 따라 관보 게재,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등의 방법으로 양형기준을 공개하고 있습니다. 또한, 2017년에 발간한 「2017 양형기준」 책자는 국회도서관, 국립중앙도서관 및 관계기관(교도소 포함) 등에 배포하였으므로 그곳에서 열람 및 복사가 가능하며, 양형위원회 홈페이지 (<http://sc.scourt.go.kr>) 양형기준 코너에도 게시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- 양형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.
- 위와 같은 내용으로 회신.

○ 2번 질의에 대한 처리 결과

- 양형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.
- 양형위원회로 접수된 귀하의 민원서에 대한 회신입니다.
- 국민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하여, 살인범죄 등 흉악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귀하의 의견에 관하여는 향후 양형위원회 회의에서 충실히 검토,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
- 양형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.
- 위와 같은 내용으로 회신.

[별지]

■ 신임 양형위원 프로필

| | | |
|---|------|--------------|
|  | 성 명 | 김 의 철 (金儀喆) |
| | 생년월일 | 1962년 7월 26일 |
| | 출생지 | 전북 |
| | 소 속 | 한국방송공사 |
| 학 력 | | |
| ○ 신흥고등학교 졸업 | | |
| ○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졸업 | | |
| 주 요 경 력 | | |
| ○ 1990. KBS 입사 | | |
| ○ 1995. 1. KBS 사회부 법조 출입기자 | | |
| ○ 1998. 5. KBS 보도국 편집부 | | |
| ○ 1999. 3. KBS 사회부 법조 출입기자 | | |
| ○ 2002. 3. KBS 정치부 | | |
| ○ 2002. 10. KBS 보도국 편집부 차장 | | |
| ○ 2003. 6. KBS 개혁추진단 차장 | | |
| ○ 2005. 4. KBS 탐사보도팀장 | | |
| ○ 2008. 4. KBS 사회팀장 | | |
| ○ 2010. 6. KBS 국제팀장 | | |
| ○ 2011. 1. 국립외교안보연구원 글로벌 리더십 연구과장 | | |
| ○ 2012. 6. KBS 보도국 라디오뉴스제작부장 | | |
| ○ 2015. 4. KBS 보도본부 디지털뉴스 에디터 | | |
| ○ 2018. 4. KBS 보도본부장 | | |
| ○ 2018. 4.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부회장 | | |